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4 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윤준병・임호선・서삼석

이병진 • 문대림 • 강선우

이워택 • 신영대 • 김윤덕

민형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천재지변,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료·농약·사료값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·전 기료 급등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 안정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.

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재료비 구입가격지수(비료, 농약 등)는 전년 대비 27.6%나 급등하였는데, 특히 20kg 요소비료 가격은 2022년 2만 8,900원으로 2019년 8,600원에 비해 3.4배 급등하였고, 소·돼지·닭의 배합사료 가격도 2019년에 비해 35% 정도 상승하였음.

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,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

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,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필수농자재로 선정된 품목이 폭등할 경우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제정법이 필요한 상황임.

따라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 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 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농업인과 필수농자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다.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및제5조).

- 라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, 시·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마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수집·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필수 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바.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,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사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지 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0조).
- 아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자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차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

조).

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 - 2. "필수농자재"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농약·비료·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자재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 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등

- 제5조(지원대상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(이하 "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지원기준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지원기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품목,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 를 수집·작성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

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·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지급신청)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지급신청·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9조(이의신청)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,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10조(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)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-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이나 농업 경영 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 및 필수농자재 지원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워 또는 고위공무워단에 속하는 공무워
- 3. 농업인단체의 대표
-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환수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 - 2.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3.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 - 4.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2조(중복지원 제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데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제1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3장 벌칙

- 제1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·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
 - 2.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금을 수령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